

4.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 誘致促進法中改正法律(案)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7-16號 1997. 3. 6

주요 골자

- 가. 민자유치 제2종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하여 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함.
- 나.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개념을 신설하여 동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민자유치 활성화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생산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추가함.
- 라. 사회간접자본채권 개념정의를 신설하여 민자유치 제1종시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민자유치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기본계획에 고시되지 않는 사업의 민간제안이 가능케하는 등 민간제안의 대상범위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.
- 바. 현재 약간명으로 되어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8인이내로 명확히 함.
- 사.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자에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정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.

아. 제1종시설사업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복합단지개발사업,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·확대하고 부대사업 추진절차도 아울러 보완함.

자. 현재의 제도에서는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조기 완공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므로 조기 완공에 대해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.

차.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간확대 및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제1종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토록 함.

개 정 이 유
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자유치대상사업 범위의 확대, 민간제안제도의 명확화,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절차, 조기완공장려제도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고 동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임.